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육·복지·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 토 지 : 23필지 42,032㎡
 - 기준가격 : 5,955,190천원(가감정액)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23필지	42,032	5,955,190				
1	대	구미시 구평동 126-1	635	455,295	'09 하반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박영식(구평동126)	가감정액
2	전	구미시 구평동 126-2	757	212,792	"	"	"	"
3	도로	구미시 구평동 126-6	175	16,432	"	"	"	"
4	임야	구미시 구평동 233	1,960	55,683	"	"	권성수(구평동 195)	"
5	임야	구미시 구평동 234	483	13,722	"	"	이정웅(진평동 468)	"
6	임야	구미시 구평동 234-1	1,170	31,063	"	"	복구할 토지(신동,구평동)	"
7	전	구미시 구평동 235	5,686	1,236,705	"	"	장봉익(구평동107-9)	"
8	전	구미시 구평동 236	2,499	633,496	"	"	노병두외1인(도량동 759)	"
9	전	구미시 구평동 237	2,486	630,201	"	"	장길환외1인(인의동341-1)	"
10	전	구미시 구평동 238	1,782	507,870	"	"	도규현 (대구 중구 봉산동177-4)	"
11	전	구미시 구평동 239	2,519	638,566	"	"	도재형외1인(구평동107-9)	"
12	전	구미시 구평동 241	2,748	736,189	"	"	박창근(구평동126)	"
13	도로	구미시 구평동 241-1	22	2,065	"	"	"	"
14	답	구미시 구평동 245	324	65,610	"	"	정지윤(구평동102-2)	"
15	구거	구미시 구평동 899-13	954	8,442	"	"	국(농수산부)	"
16	임야	구미시 구평동 산15-2	8,494	96,831	"	"	장우익외3인 (인의동448-18)	"
17	임야	구미시 구평동 산 16	1,983	22,130	"	"	박계화(구평동195)	"
18	구거	구미시 구평동 산128	840	7,434	"	"	국(건설교통부)	"
19	구거	구미시 구평동 산129	2,554	22,602	"	"	"	"
20	대	구미시 구평동 125-1	464	332,688	"	"	김영순(신평동 175)	"
21	대	구미시 구평동 125-4	242	176,418	"	"	조현정 (진평지구 29블럭3롯트)	"
22	임야	구미시 구평동 산 19-2	255	7,956	"	"	인동지동차학원주식회사 (구평동246-1)	"
23	임야	구미시 구평동 산 20-3	3,000	45,000	"	"	신창호외1인(칠곡군 석적읍 남울리 710)	"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 소재지 : 구미시 구평동 126-1번지 외 22필지

○ 지목 및 면적 : 토지 42,032㎡

□ 위치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